##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

#### 목차

교육목적

교육의무 주체 :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 교육내용 및 시간

#### 교육목적

•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 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

#### 교육의무 주체 :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

-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
- 원도급업체는 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 발생

### 교육내용 및 시간

#### 교육내용 및 시간

구분	교육내용	시간
공통	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(건설일용근로자 관련부분)	1시간
	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	

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1

교육대상별	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 (재해사례 및 예방대책)	2시간
	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	1시간

#### 대한창조안전교육원

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대한창조 / 대한창조안전교육원



http://kcsht.co.kr/

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2

# 건설업 기초안전보관

#### 교육시간

교육일자: 매일 2회 교육

교육시간: 4시간 교육

평일 오전 08:30~12:30

모후 13:00~17:00

토묘일 오전 09:00 ~ 13:00

오후 13:30~17:30

#### 무료교육 대상자

○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

- 1.만55세 이상
- 2.민20세이하
- 3.장애인근로자
- 4.기초생활수급대상자
- 5.장기실업자(3개월이상)
- \* 반드시 증빙 서류 지참(신분증, 관련서류 등)
- \* 지원제외 대상 : 외국인, 이미 교육 받은 분



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전문기관 부산시 동구 범일로102번길 14, 8층 ㈜대한창조안전교육원 T.051.635.7800

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3